청소년복지 지원법 (약칭: 청소년복지법)

[시행 2024. 12. 27.] [법률 제19841호, 2023. 12. 26., 타법개정]

여성가족부 (청소년자립지원과) 02-2100-6272 여성가족부 (청소년정책과) 02-2100-623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「청소년기본법」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3. 23.>

- 1. "청소년"이란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청소년복지"란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.
- 3. "보호자"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위기청소년"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- 5. "가정 밖 청소년"이란 가정 내 갈등・학대・폭력・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
- 6. "청소년부모"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.
- 제2조의2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 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7.>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방법,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8. 12. 18.]

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

- 제3조(청소년의 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·문화시설·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
 - 2.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
 -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
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, 학생증,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, 12, 26.>
 -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**제4조(청소년증)** 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·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

- 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<개정 2016. 12. 20.>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<신설 2017. 12. 12., 2021. 4. 20.>
 -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, 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 12. 12., 2021. 4. 20.> [제목개정 2017. 12. 12.]
- 제6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·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・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제8조(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)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 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

-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・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・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2(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) ①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 및 시・군・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관계 행정기관, 「청소년 기본법」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(이하 "청소년단체"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, 조직 및 운영,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- 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 -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1. 3. 23.>
 -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신설 2021. 3. 23.>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1. 3. 23.> [제목개정 2021. 3. 23.]
- 제11조(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 ·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12조(상담과 전화 설치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・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 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2(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,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(이하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・보유・이용・제공・연계할 수 있다.<개정 2021. 12. 7.>
 - 1.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
 - 2.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
 - 3.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
 - 4.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
 - 5.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
 - 6.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
 - 7. 제19조에 따른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
 - 8.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
 - 9.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
 - 10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
 - 11.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・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
 - 12. 「청소년 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・재활센터 관련 정보
 - 1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
 - 14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5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(이하 "관계 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·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다.
-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한다.
-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・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・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・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

- **제13조(상담 및 교육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・경제적 지원(이하 "특별지원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 - 1.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
 - 2.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
 - 3.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- 5.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8., 2021. 3. 23.>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8, 12, 18, 2021, 3, 23.>
- **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**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・홍보・연구・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,, 2023. 10. 24.>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3. 23.>
 -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 3. 23.>
 -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1. 3. 23.>

[제목개정 2021. 3. 23.]

제17조 삭제 <2014. 5. 28.>

- **제18조(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
 - 2.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

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<신설 2021. 3. 23.>

- **제18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- 1.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 - 2. 「지역보건법」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
 - 3. 교육・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
 -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- 제18조의3(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- 2.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- 3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- 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- 제18조의5(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
 - 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
 - 3. 직업소개 및 관리
 - 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·향상 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제6장 예방적 • 회복적 보호지원 <개정 2018. 12. 18.>

- 제19조(예방적・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) 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・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・학교・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,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예방적・회복적 보호지원(이하 "보호지원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 - 1. 비행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
 - 2.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
 -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・학교・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・교육・자원봉사・수련・체육・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 -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한 번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8. 12. 18.>
 -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12. 18.> [제목개정 2018. 12. 18.]
- 제20조(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운영,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- 제21조(보호지원후견인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)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-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·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
[제목개정 2018. 12. 18.]

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

제22조(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)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이하 "청소년상담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- 1. 삭제 < 2021. 3. 23.>
- 2. 삭제 < 2021. 3. 23.>
- 3. 삭제 < 2021. 3. 23.>
- 4. 삭제 < 2021. 3. 23.>
- 5. 삭제 < 2021. 3. 23.>
- 6. 삭제 < 2021. 3. 23.>
- 7. 삭제 < 2021. 3. 23.>
- 8. 삭제 < 2021. 3. 23.>
- 9. 삭제 < 2021. 3. 23.>
-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신설 2021. 3. 23.>
- 1.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
- 2.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
- 3.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・보급
- 4. 청소년 상담 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
- 5.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
- 6.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복지시설 및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
- 7.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
- 8.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
- 9.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「청소년 보호법」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유지· 관리 및 운영
- 10.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
-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.<개정 2021. 3. 23.>
-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(分院)을 둘 수 있다.<개정 2021. 3. 23.>
-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개정 2021. 3. 23.>

제23조(정관)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사업에 관한 사항
- 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8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9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24조(사업계획서의 제출 등)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2. 3.>
- 제25조(보조금 및 출연 등)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24.>
 - 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4. 3. 24.]

- 제26조(임원) ①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16. 12. 20.>
 - ②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<개정 2016. 12. 20.>
 - ③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(任免)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④ 감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27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,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 -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6. 12. 20.>

[제목개정 2016. 12. 20.]

- **제28조(「민법」의 준용)**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한다)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・긴급구조・자활・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>
 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 - 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・군・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7조 제1항에 따라 시・군・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. 21.>
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⑤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 -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 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8장 청소년복지시설

- **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**「청소년기본법」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"청소년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1. 3. 23.>
 - 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・학교・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 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 - 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 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 - 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・정서・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・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 - 4. 청소년회복지원시설: 「소년법」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제32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「청소년기본법」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12. 18.>
 - ④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8. 12. 18.>
 -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·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 -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·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- 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) ① 청소년쉼터(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 3. 23., 2021. 4. 20.>
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
 - 2.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
 -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

4. 20.>

[본조신설 2016. 12. 20.] [제목개정 2021. 3. 23.]

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자립에 필요한 주거・생활・교육・취업 등의 지원
- 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- 3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-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-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0. 24.]

- 제33조(휴업・폐업 등의 신고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(再開)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- **제34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)**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·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 10. 24.>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, 교육·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3. 10. 24.>
- 제35조(시설개선, 사업정지, 폐쇄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, 1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>
 - 1.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2.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 - 3. 회계 부정,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
 - 4.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
 - 5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6조(청문)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, 사업정지,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
제9장 보칙

- 제37조(비밀 누설의 금지) 청소년상담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(이하 "청소년복지지원기관"이라 한다)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**제38조(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)**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- 제39조(감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·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.
- **제40조(예산의 보조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41조(기관·시설 등의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**제42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**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- **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**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 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3. 5. 28.]

제10장 벌칙

- 제43조(벌칙)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21. 3. 23.>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1. 3. 23 >
 - 1.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
 - 2.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1. 3. 23.>
 - 1.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
 - 2.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[시행일 : 2021. 6. 24.] 제43조제2항
- 제44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4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38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- 2.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·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
- 2.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18. 12. 18.>

부칙 <제19841호,2023. 12. 26.>(주민등록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
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주민등록증"을 "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① 생략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